

전주 도시관리계획(호자4지구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전주시 고시 제2015-112호(2015.08.28.)로 전주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 중 일부 착오 사항이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
2023년 06월 30일

전 주 시 장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: 정정없음
2.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: 정정
 - 가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정정없음
 - 나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정정없음
 - 다)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정정
 - 1) 단독주택용지 : 정정없음
 - 2) 공동주택용지 : 정정없음
 - 3) 근린생활시설용지 : 정정없음

4) 준주거시설용지 : **정정**

도면 표시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
-	CE1~ CE7	용도	당초	■ 지정용도 -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준주거지역내 허용되는 건축물중 ·판매 및 영업시설 ·업무시설 - 의료시설(간선부) -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(이면부) -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재25호의 발전시설 중 신·재생에너지설비 (미관지구 내 태양광발전시설 제외) ■ 불허용도 -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준주거용지내 허용되는 용도 중 ·문화및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·공장, 창고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준한 금지시설
			정정	■ 권장용도 -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준주거지역내 허용되는 건축물중 ·판매 및 영업시설 ·업무시설 - 의료시설(간선부) -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(이면부) -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재25호의 발전시설 중 신·재생에너지설비 (미관지구 내 태양광발전시설 제외) ■ 불허용도 -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준주거용지내 허용되는 용도 중 ·문화및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·공장, 창고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준한 금지시설

■ 정정사유서

- 기 결정조서의 기재 착오사항 정정

5) 기타시설용지 : 정정없음

3. 관계도면 : 실음 생략

4. 관계도서 열람 장소 : 전주시청 도시계획과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도시계획과(☎063-281-244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